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포함〉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493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49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12. 22.
- (3) 회 부 일 : 2025. 12.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현장조사, 피해장애인 응급보호 등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 피해장애인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장애인이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신설).

[illegible]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3.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 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 25. (생략)	4. ~ 26. (현행 제3호부터 제2 5호까지와 같음)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최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등을 성추행하여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음.¹⁾

해당 사건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접수, 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부에서 범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상 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외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즉각적인 수사기관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로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특히, 직무상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신고처를 수사기관으로 한정하고, 지체없이 직접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1) 한영혜, 2025년 10월 4일, 장애인 보호직원이 장애인 성폭행...법정선 "발기부전" 발뺌,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2189>

장애인학대 대응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법정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현행 규
정상 공백을 보완하는 동시에,

기관 내부 사건에 대한 자체 처리 또는 지연 가능성을 차단하고,
학대 및 성범죄의 은폐 또는 장기화를 선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피해장애인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²⁾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현행법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의무가 없고, 미이행시 과태료 또한 부과받지 않으며, 가중처벌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³⁾

「장애인복지법」[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14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개정안은 2026. 5. 12.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114호 「장애인복지법」(공포 후 시행 전 상태)을 대상으로 함.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의2(가중처벌) ②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은 제외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상시종사자가 30명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밑줄친 각 호는 2026. 5. 12.부터 시행 예정

□ 참고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는 각각 노인학대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음.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1의2.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4)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임.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만, 개정안에서는 단서 규정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처를 수사기관으로 특정하는 것일 뿐,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개정안과 같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로 규정한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외부에서 발생하였으나 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가해자인 사건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 따라서, 과태료 부과와 직접 연계되는 신고의무 규정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 부과되는 신고의무는 외부로부터 접수·조사하는 사건이 아니면서, 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인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

□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 전인 법률 제21114호 「장애인복지법」(2026. 5. 12. 시행 예정, 2025. 11. 11., 일부개정)을 대상으로,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2027. 5. 12.로 특정하여 종전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① 개정안의 내용이 새로운 행정조직의 설치나 대규모 제도 개편을 수반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신고의무 주체의를 추가하는 단순 규정 정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현행법의 신고의무자 규정도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었다는 점,

③ 개정안에 의해 새롭게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이미 장애인학대 대응을 전담하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직업적 윤리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고의무자 추가를 이유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5) 예컨대, 개정안의 단서 규정을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가해자인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한하여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개정안 공포 시점별 시행 시기 비교(공포 후 6개월 기준)>

개정안 공포 시점(가정)	시행일	개정안 시행 예정일	종전 법률 시행일(2026.5.12.)과의 관계
2026년 1월	공포 후 6개월	2026년 7월	종전 법률 시행일로부터 약 2개월 경과 후 시행
2026년 2월		2026년 8월	종전 법률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 경과 후 시행
2026년 3월		2026년 9월	종전 법률 시행일로부터 약 4개월 경과 후 시행
2026년 5월		2026년 11월	종전 법률 시행일로부터 약 6개월 경과 후 시행
2026년 8월		2027년 2월	종전 법률 시행일로부터 약 9개월 경과 후 시행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신고 주체와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내부견제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을 부과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조사하는 기관으로, 신고의무자로 규정 시 신고접수 주체와 신고의무 주체의 혼재로 법리상 자기모순이 우려됨.
 -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신고의무자가 아닌 것은 신고

주체이자 신고를 접수하는 객체가 되는 논리적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신고의무자는 과태료와 연관되어 있어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중요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은 직무상 알게 된 경우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가 신고접수한 것도 신고의 대상인지, 신고의 범위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차원의 인지를 의미하는지, 신고접수 건도 다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등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수사기관 신고까지 의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조사자-당사자 간 신뢰관계 형성 저하도 우려됨(장애인학대 신고사례 중에는 피해장애인이 피해자지원만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음).

□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의무자 추가 보다는 「장애인복지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추가(종사자가 학대범죄를 저질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사실을 은폐하거나 조치를 지연한 경우 등)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관계 단체

단체명	의견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수사기관 신고의무를 부과할 경우, 조사 및 피해자 지원 업무와 신고 절차를 병행하는 이중 의무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절차적 혼선 및 신속한 개입 지연 우려 -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사기관의 협력 파트너이자 전담 대응기관으로 전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일반적인 신고의무자 범주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 정합성이 떨어지며, 전문적 권한과 책임의 성격을 축소·경감할 소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적 역할과 장애인학대 대응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내부 발생 사건의 은폐·조치 지연 시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안적 입법방안 마련이 현장 적용에 실효적일 것으로 판단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
지체장애인협회	- 기관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성범죄의 은폐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의 실효성 제고 - 기관 내부에서의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발생 재발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함.

문의처

02)6788-5502